



보도자료

▶ 고용보험정책팀장 박형정
▶ 담당서기관 김성호
T E L : 503-9763
E-MAIL : kwwwwa@hanmail.net
F A X : 502-2714

▶ 2007. 9. 21 배포
▶ 총 2 쪽 (사진없음)

훈련연장급여 인상합니다.

- 노동부, 훈련연장급여 인상 등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-

-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100%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.
- 노동부는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, 훈련연장급여액을 구직급여의 70%에서 100%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.
- 훈련연장급여는 저소득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수단이자,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.
 - 그러나, 구직급여의 70% 수준인 현행 훈련연장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5%에 불과하여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할 유인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등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급여액 인상, 운영 합리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어 왔다.
- 노동부 이우룡 노동보험정책관은 “앞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로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재취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보도 참고자료

□ 훈련연장급여 개요

-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시할 수 있음 (고용보험법 제51조)
- 위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을 경우 수급기간이 만료되어도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70%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 (고용보험법 제52조, 54조)
-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은 ①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, ②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있어도 그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을 것, ③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등임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훈련연장급여제도 활용실적이 저조 ('05, '06년 각각 18건)

< 훈련연장급여 지급자수 및 지급액 >

(단위 : 명, 백만원)

구분	'97	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
지급자수	31	17	3	2	11	8	-	2	18	18
지급액	37	105	45	2	6	23	-	5	22	61

○ 원인

- 구직급여의 70%는 평균임금의 35%에 불과하여 훈련연장급여 제도에 참가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음
- 40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훈련직종을 3D직종(우선선정직종)으로 제한함에 따라 선택의 폭이 제약

- 훈련기관에 개설된 훈련과정이 다양하지 않고 희망과정과 일치하지 않으며, 훈련시기가 특정시기(3월, 8월)에 집중
- 대상자 선정요건이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담당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

□ 개선방안

<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 인상 : 법 제54조 개정>

- 훈련연장급여 수준은 구직급여일액의 100% 수준 지급
 - 현행 70%에서 100% 수준으로 30%p 인상

- ◆ 구직급여액의 70%는 평균임금의 35% 수준에 불과하여
 - 훈련의 필요성과 훈련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액으로 장기간 훈련받는 것을 기피할 우려

<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개선 : 예규개정, 운영개선>

- 훈련직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담당자가 대상자 특성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훈련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
 - 훈련과정이나 훈련직종을 전직 실업자훈련과 동일하게 운영
 - 훈련시기 및 훈련과정·훈련직종 등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
 - 지역 전략산업이나 공급이 부족한 직종의 경우 지방관서별 또는 청 단위로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수시 지정하여 운영
- ※ 지역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공모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훈련직종 공고, 과정 심사 등 공모절차 이행

<훈련지시 대상자 요건 : 시행규칙, 예규 등 개정>

- 현재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규정된 대상자 선정요건을 객관화, 명확화함으로서 담당자들의 적극적 활용 유도
 - 훈련연장급여는 취업취약 계층 중에서 특히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경우 취업가능성에 제고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
 - 훈련지시가 필요한 취업취약 계층을 객관적인 요건으로 정하되 재취업 가능성, 성실한 훈련 이수 등에 대한 판단은 담당자가 심층상담 등을 통해 결정토록 함
 - 다만, 대상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자, 여성가장, 장애인, 비정규직 이력자,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는 자, FTA무역조정으로 이직한 자 등을 최우선 고려

<예시>

- ① 저소득자(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로 한다)
 - 이직전 최종 사업장에서 급여기초일액이 5만원 이하인 자
 -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인 자
 -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
- ② 여성가장 (또는 경력단절 여성)
- ③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
- ④ 이직 직전에 3월이상 일일근로 또는 3월이상 임시직으로 근로한 경험이 있는 이력자
- ⑤ 최근 3년간 비자발적 사유로 2회 이상 이직한 경험이 있는 자
- ⑥ 「무역조정지원법」에 의한 무역조정근로자 등

<운영방법 개선>

- 센터별 전문 담당자 1명씩 지정(위원회 간사 겸직 가능), 훈련 연장급여 담당자 교육실시, 매뉴얼 작성 보급

- 직업안정기관에 **심의위원회**를 설치하여 훈련지시 대상자 심의, 지시받은 자의 훈련태도 점검, 훈련연장급여 활성화 방안 논의, 지역 경제동향 분석 및 전파 등
- 훈련연장급여 지급실적을 직업안정기관 업무 평가에 반영

□ **법률안의 주요내용**

현행	개정안
제54조 (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) ① (생략) ②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③(생략)	제54조 (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) ① (현행과 같음) ②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
- 현행법상 구직급여 지급일수 만료 이후에 연장 지급되는 연장급여는 **훈련연장급여(제51조)** 외에 **개별연장급여(제52조)**와 **특별연장급여(제53조)** 등 총 3가지임

※ **개별연장급여** : 취업취약 계층 중 특히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지급

※ **특별연장급여** : 대량 실업사태나 극심한 경제불황 등의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모든 수급자(일부 고소득자 제외)에 대해 연장 지급 (과거 외환위기 직후 실시한 적이 있음)

- 각 연장급여 관련조문에서 구직급여의 연장을 규정하고, 제54조에서 연장되는 구직급여액을 기존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70으로 감액토록 규정함에 따라

- 동 조항을 개정하여 훈련연장급여액은 감액대상에서 제외